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97
----------	-----

2020. 9. 16.(수)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0년 8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8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9월 4일

－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가. 제안사유

-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 경관의 기본방향과 전략 제시로 경관을 보전하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립한 충청북도 경관계획안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계획의 범위

- 시 간 : '20년 ~ '24년 ※ 5년마다 수립
- 공 간 : 도내 11개 시군 전지역
- 내 용 : 특성별 경관 보전방향 및 발전방향 제시

### 2) 계획안 주요내용

- 충청북도 경관 미래상
  - 고유의 경관가치를 나누고, 아름다움을 더하는 충북
- 4대 추진목표
  - 지역간 소통과 시너지를 만드는 계획
  -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도 공감하는 계획
  - 경관 관리체계를 재구축하는 계획
  - 지역여건에 맞는 실행가능한 계획
- 기본 계획
  - 경관권역 계획(3) :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 경관축 계획(4) : 산림녹지, 수변, 도로, 철도
  - 경관거점 계획(5) : 산림, 수변, 지표, 도시진출입, 역사·문화
  - 시·군별 계획 : 11개 시군
- 중점경관 관리구역 계획
  - 중점경관 관리구역 보완 및 신규 대상자원안 제시
  - 반영대상(3개 시군), 보완 필요대상(2개 시군), 신규 설정대상(6개 군)
- 경관지구 관리계획

- 유형별(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경관관리 지침 제시

○ 특정 경관유형 관리계획

- 유형별 : 산림, 수변, 농산촌, 역사문화, 가로경관

- 요소별 : 건축물,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가로 시설물,  
오픈 스페이스

○ 세부실행계획

- 경관행정 및 제도 선진화 검토

-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경관 관리방안 제시

-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추진방안 제시

**다. 그동안 추진경위**

○ 19. 2. 22. : 충청북도 경관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19. 6. 24. : 착수보고회 개최

○ 19. 12. 9. : 중간보고회 개최(1차)

○ 20. 4. 10. : 중간보고회 개최(2차)

○ 20. 6. 19. : 경관계획안 공청회 개최

○ 20. 7. 14. ~ 8. 12. : 관계기관 협의

**라. 향후 추진계획**

○ 20. 9. : 충청북도 경관위원회 심의

○ 20. 10. : 충청북도 경관계획 최종보고회

○ 20. 11. : 충청북도 경관계획 완료

○ 20. 12. : 경관계획 공고 및 관계기관 송부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가. 의견청취 목적 및 필요성

- 2006년에 수립한 「충청북도 경관계획」은 경관구조적 차원의 관리와 유형별 관리부분에서 관리수단 연계가 부족하고 개정된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의 지침항목과의 적합성도 부족하여 현 체계에 맞는 재정비가 필요
- 도시·자연·역사·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경관 형성·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행력이 갖춰진 경관계획 수립
- 기존 수립한 경관기본계획상의 경관유형별 계획원칙, 권역별 경관 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참고하여 경관구조를 재검토 하고,
  - 토지이용에 따른 유형별, 요소별 경관계획을 구상하여 도시기반 시설, 공공시설물, 건축물 등의 경관관리를 체계적으로 유도 할 수 있는 경관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

#### 나. 경관계획안 주요내용

- 경관미래상 및 추진전략 설정
  - 경관미래상은 '고유의 경관가치를 나누고, 아름다움을 더하는 충북'으로 하고,
  - 경관관리체계의 재구축, 지역여건에 맞는 실행력, 지역간소통과 시너지,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4대 목표를 설정

## ○ 경관권역·축·거점계획

- 기존의 경관계획의 골격 구조를 반영하되 경관계획의 내용과 대상을 구체화

### □ 경관권역

- 기존의 3개 권역개념을 유지하며 충청북도에 접한 인근 시도의 경관권역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

### □ 경관축

- 산림녹지축은 산림자원의 기치보존 및 주변부 경관관리
- 수변경관축은 생태환경 보존 및 지역관광자원화 개념확산
- 도로경관축은 도로주변 위해경관 차폐 및 도로환경 쾌적성 향상
- 철로경관축은 철로주변시설 개선 및 역주변 개발사업지역 쾌적한 경관형성 유도

### □ 경관거점

- 산림경관거점 41개소는 조망차폐요소 억제 및 조망명소화 유도
- 수변경관거점 21개소는 수자원을 중심으로 여가·문화활동 가능토록 완화
- 지표경관거점 3개소는 랜드마크 공공건축물 지표 역할토록 쾌적성 유지
- 역사문화경관거점 53개소는 역사적 가치 지속보존 및 시민생활 중심 공간으로 공공가치 유도
- 도시진출입경관거점 7개소는 충북의 도시이미지 인지 유도

## ○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 시군별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현황에 따라 도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은 3개 시군이고,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2개 시군이며, 신규 설정대상 지역으로 6개 군이 해당

## 다. 실행계획 확보 및 개선사항

### ○ 경관행정 및 제도 선진화

- 도 와 시군간의 역할 및 책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제시 필요
- 기존 제정된 시군의 조례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며, 조례가 없는 3개 군은 조속히 제정 필요
- 타 시·도지역의 조례 및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수사례를 반영
- 경관심의제도의 구체적 운영방법과 경관심의 검토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준제시 필요

###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방안

- 충북은 도시지역이 9.9%(2017년기준)에 불과하여 향후 비도시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자연경관 훼손 우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검토하여 향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경관계획과 연계 필요

### ○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추진방안

- 도와 시군의 경관사업과 관련된 규정 조례 및 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시군에서 활발하게 경관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차원으로 지원근거 마련
-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경관을 보전관리할 수 있는 경관협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제도 마련

## 라. 종합의견

- 경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에서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
- 특히, 도민참여율을 높여 지역 및 도민간의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고 시군 및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경관계획 수립에 노력
- 아울러, 본 계획안은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중에 발생하는 계획의 변경·보완 사항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기타 다른 법률·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

의안번호	제497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8월 26일

#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

의안 번호	497
----------	-----

제출연월일 : 2020년 8월 26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 경관의 기본방향과 전략 제시로 경관을 보전하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립한 충청북도 경관계획안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 도내 경관 자원·구조·의식 조사, 관련 법령 및 계획 분석
- 충청북도 경관 기본 구상
  - 미래상 : 고유의 경관가치를 나누고, 아름다움을 더하는 충북
  - 추진전략(4)
    - 협력적인 : 지역간 소통과 시너지를 만드는 계획
    - 공감하는 :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도 공감하는 계획
    - 체계적인 : 경관 관리체계를 재구축하는 계획
    - 실천적인 : 지역여건에 맞는 실행가능한 계획
- 충청북도 경관 기본 계획
  - 경관권역(3) :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 경관축(4) : 산림녹지, 수변, 도로, 철도
  - 경관거점(5) : 산림, 수변, 지표, 도시진출입, 역사·문화
  - 시군별 경관 관리 과제, 중점경관 관리구역·경관지구 관리 계획 등

## 3. 의안전문 : 붙임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요지)

※ 본보고서, 요약본, 매뉴얼 각 1부 별첨

## 4. 관계법령 발체 : 붙임

##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 I

### 경관계획 개요

#### 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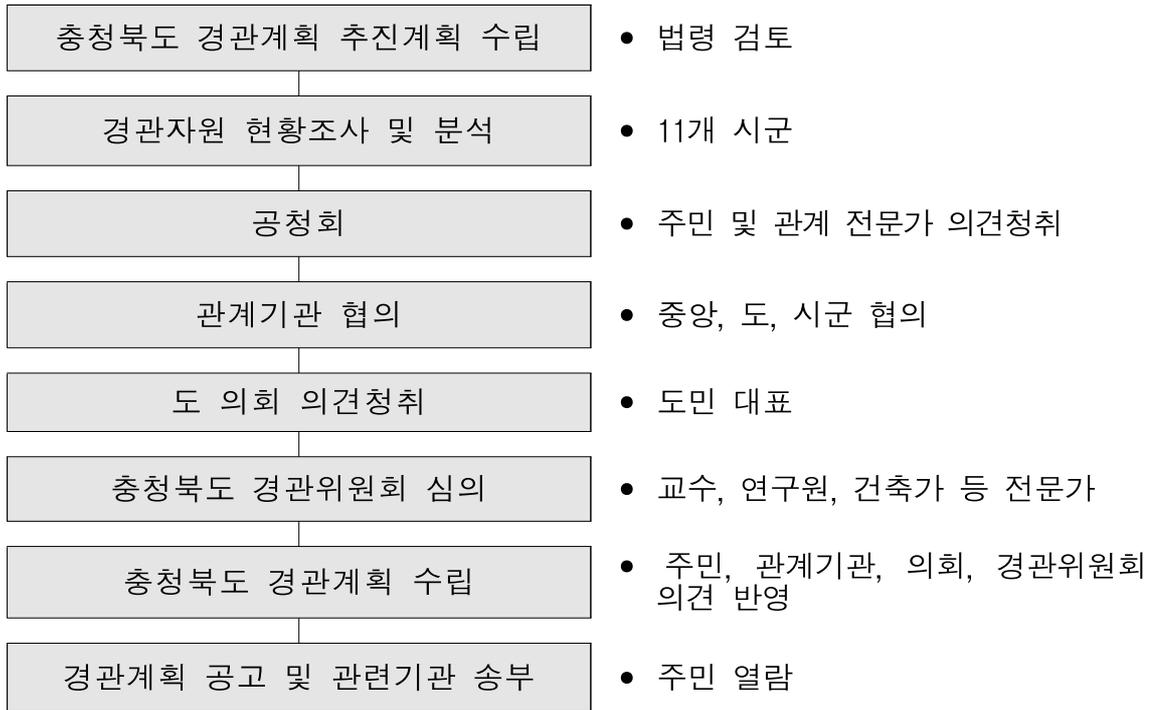
- 경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기존 경관계획의 재정비
- 시·군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관리의 근거로서 상위계획 필요
- 충청북도의 현황과 경관가치에 부합하는 도시경관 목표 설정
- 경관관리 단위별 관리기준의 기초 마련

#### 2.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0년 ~ 2024년 ※ 5년마다 수립
- 공간적 범위 : 도내 11개 시군 전역(약 7,407km<sup>2</sup>)
- 내용적 범위

구분	주요내용
경관계획의 개요	○ 경관기본계획 수립목적과 범위, 추진과정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 유형별 경관자원, 경관구조, 경관행정 현황 조사
경관기본구상	○ 충청북도 경관미래상, 추진전략 설정 ○ 경관구조 설정(경관권역, 축, 거점)
경관기본계획	○ 경관구조별 계획(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 시·군별 경관관리과제 ○ 중점 경관관리구역 계획 ○ 경관지구 관리계획
특정경관 유형 관리계획	○ 경관유형별 관리계획(산림, 수변, 농·산촌, 역사문화, 가로) ○ 경관요소별 관리계획(건축물, 야간경관, 색채,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실행계획	○ 경관관리 및 운영, 경관협정, 경관사업 등 실행방향 제시
경관심의 매뉴얼	○ 경관심의, 자문 운영기준 제시

### 3. 계획수립 절차



### 4. 추진상황

- 충청북도 경관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19. 2. 22.
- 용역계약 체결 : 19. 6. 17.
- 착수보고회 개최 : 19. 6. 24. 도의회 회의실
- 중간보고회 개최(1차) : 19. 12. 09. 충북연구원
- 중간보고회 개최(2차) : 20. 4. 10. 충북연구원
- 경관계획안 공청회 개최 : 20. 6. 19. 충북연구원
- 관계기관 협의 : 20. 7. 14. ~ 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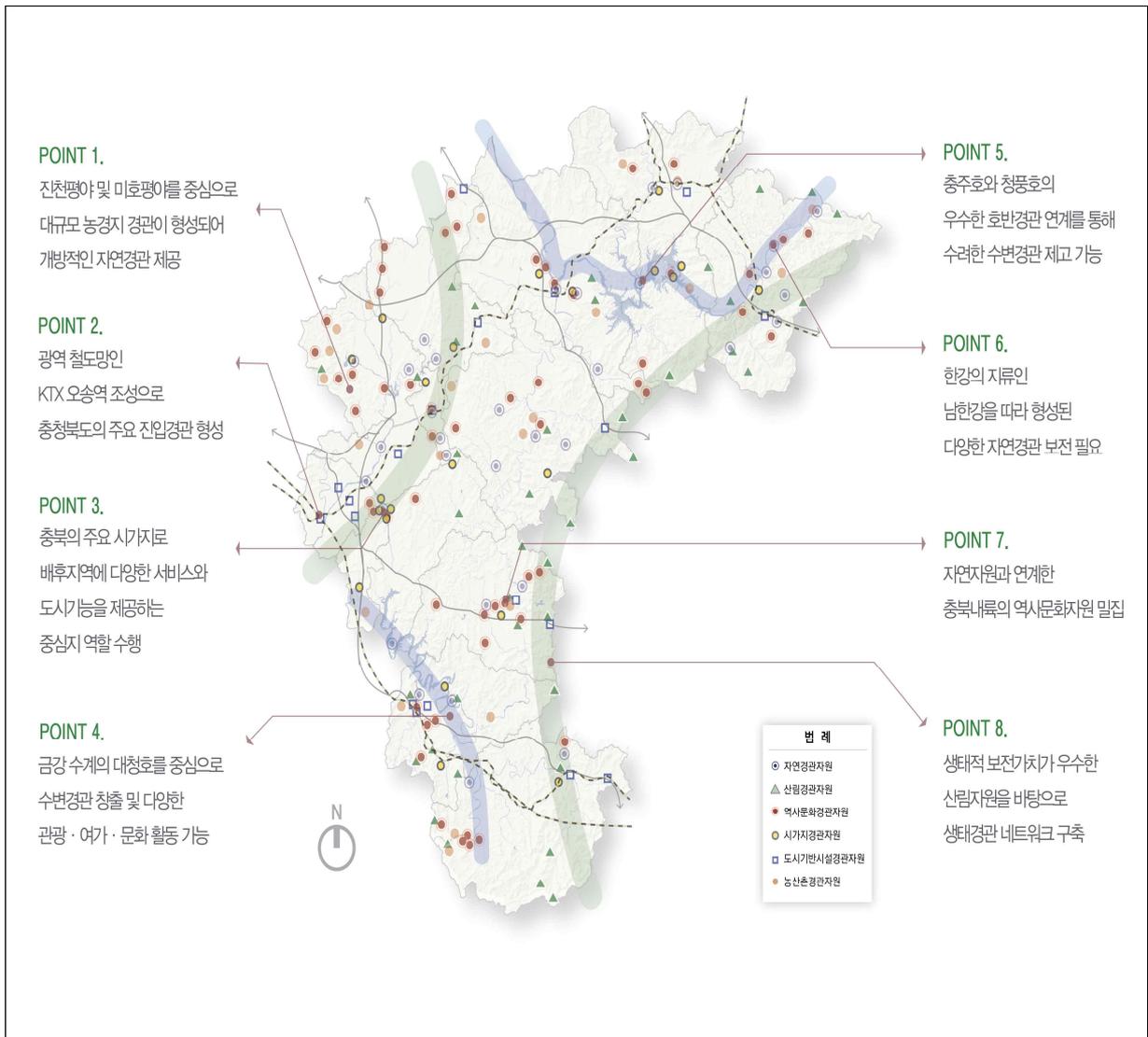
### 5. 향후계획

- 충청북도 경관위원회 심의 : 20. 9.
- 충청북도 경관계획 최종보고회 : 20. 10.
- 충청북도 경관계획 완료 : 20. 11.
- 경관계획 공고 및 관계기관 송부 : 20. 12.

## II

##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 경관자원 조사 : 경관유형별 충청북도의 대표 경관자원 선정
- 경관구조 분석 : 경관자원의 보전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도내 다양한 경관 특성 도출
- 경관의식 조사 : 거주민, 방문객, 공무원, 전문가 의견수렴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경관정책 기본계획, 충청북도 종합 계획, 시·군 경관계획 검토



### Ⅲ

## 충청북도 경관 기본 구상

### ○ 경관미래상 및 추진전략 설정

- 법령, 의식조사, 도정방침을 반영한 충청북도 경관미래상 도출

# 고유의 경관가치를 나누고,

# 아름다움을 더하는, 충북

충청북도의 균형적 경관향상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도민, 시·군의 행정과 공유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실행을 유도하여 더 나은 도시경관을 만들고, 가꾸고자 하는 충청북도의 의지

목표 1 **협력적인**



**지역간 소통과 시너지를 만드는 계획**

목표 2 **공감하는**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도 공감하는 계획**

목표 3 **체계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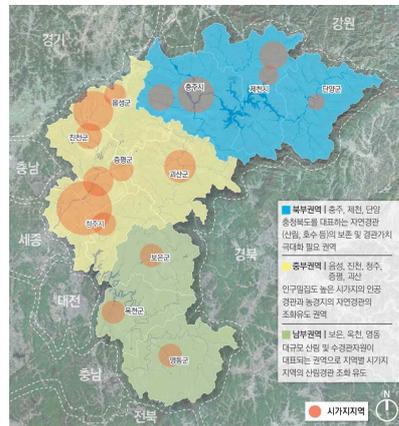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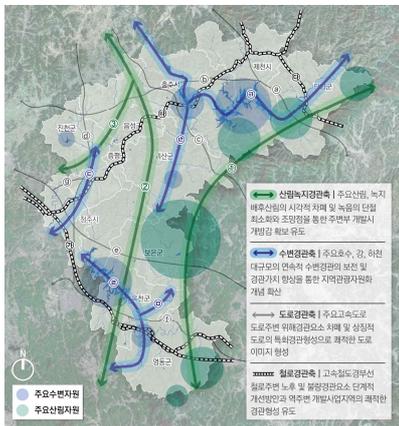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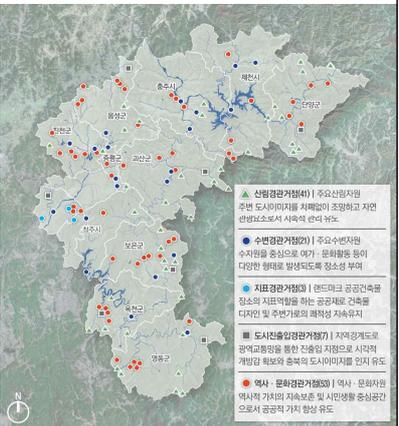
**경관관리체계를 재구축하는 계획**

목표 4 **실천적인**



**지역여건에 맞는 실행가능한 계획**

### ○ 경관구조 설정

경관권역 (3개 권역)	경관축 (4개 유형)	경관거점 (5개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부권역</li> <li>• 중부권역</li> <li>• 남부권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녹지 경관축</li> <li>• 수변 경관축</li> <li>• 도시 경관축</li> <li>• 철도 경관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 경관거점</li> <li>• 수변 경관거점</li> <li>• 지표 경관거점</li> <li>• 도시진출입 경관거점</li> <li>• 역사·문화 경관거점</li> </ul>
 <p><b>북부권역</b>   송주, 제천, 단양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자연경관 산림, 호수, 습지 보호 및 경관가치 확대에 필요 권역</p> <p><b>중부권역</b>   음성, 진천, 청주, 충주, 괴산 인구밀집도 높은 시가지와 인공 경관과 농경지의 자연경관의 조화로운 권역</p> <p><b>남부권역</b>   보은, 옥천, 영동 대규모 산림 및 수변권역이며 대표되는 권역으로 지역별 시가지 지와의 산림경관 조화 유도</p> <p>● 시가지지역</p>	 <p>→ <b>산림(녹지)경관축</b>   주요산림, 녹지 매개체로서의 시각적 차폐 및 녹음의 단절 최소화와 조경기능을 통한 주변부 개발시 개발강제 유도</p> <p>→ <b>수변경관축</b>   주요수계, 하천 대규모의 연속적 수변경관의 보전 및 경관가치 향상을 통한 차폐경관자원화 기대 확산</p> <p>→ <b>도시경관축</b>   주요고속도로 도로주변 위생경관요소 차폐 및 상징적 도로의 특화경관형성으로 쾌적한 도로 이미지 형성</p> <p>→ <b>철도경관축</b>   고속철도경관선 철도주변 노후 및 불량경관요소 단계적 개선형으로 역주변 개발사업지역의 쾌적한 경관형성 유도</p> <p>● 주요수변거점</p> <p>● 주요산림거점</p>	 <p>▲ <b>산림경관거점(4)</b>   주요산림거점 주변 도시이미지를 차폐하고 자연 안락요소로서 시각적 안락 유도</p> <p>● <b>수변경관거점(2)</b>   주요수변거점 수자원을 중심으로 예가, 문화활동 등이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도록 장소성 부여</p> <p>● <b>지표경관거점(3)</b>   랜드마크 공공건축물 장소의 지형(지형)을 위한 공간제형 건축물 디자인 및 주변개발의 촉매적 저축유도</p> <p>■ <b>도시진출입경관거점(7)</b>   지역경제유발, 공공교통정착, 행정 기능집중을 시가지 개발강제와 함께 지역의 도시이미지를 인지 유도</p> <p>● <b>역사·문화경관거점(3)</b>   역사·문화자원을 역사·문화재현 및 시민생활 향상공간으로서 공공적 가치 형성 유도</p>

## IV

# 충청북도 경관 기본 계획

### 1. 경관권역 계획

북부권역 (충주, 제천, 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경관자원의 보존과 원도심 활성화 유도</li> <li>○ 기 개발된 지역의 경관 재정비 및 관리</li> </ul>
중부권역 (청주, 증평, 음성, 진천, 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요소간 균형을 통해 시각적 쾌적성 향상</li> <li>○ 자연과 인공경관이 조화로운 경관 조성</li> </ul>
남부권역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자연경관 우선의 생활환경 형성 및 관리</li> <li>○ 낙후된 인공경관 디자인 개선</li> </ul>

### 2. 경관축 계획

산림녹지 경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북도 골격을 이루는 산림녹지축 지형지세 보전 및 관리</li> <li>○ 산림과 연접한 인공경관의 관리로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li> </ul>
수변 경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변의 생태환경 보존 및 수변방향 열린 경관 형성</li> <li>○ 다양하고 활력있는 친수공간 형성</li> </ul>
도로 경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주변 위해경관 차폐 및 도로환경 쾌적성 향상</li> <li>○ 도로주변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관형성 유도</li> </ul>
철도 경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주변시설 위해경관 이미지 완화 및 관리</li> <li>○ 시가지 통과지역 및 철도 주변부 관리</li> </ul>

### 3. 경관거점 계획

산림 경관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망 차폐요소 억제 및 조망 명소화 유도</li> <li>○ 산림 경관거점 주변의 인공시설물 관리</li> </ul>
수변 경관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경관자원 주변 경관정비 및 위해경관 완화</li> <li>○ 주변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공간 제공</li> </ul>
지표 경관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 주변시설 및 가로의 지속관리 및 개선</li> <li>○ 장소성 형성을 위한 경관특성 강화</li> </ul>
도시진출입 경관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의 도시 이미지를 담은 진입경관 형성</li> <li>○ 시계지역 경관개선 및 관리</li> </ul>
역사·문화 경관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부 경관관리를 통한 인지성 및 접근성 향상</li> <li>○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강화</li> </ul>

## 4. 시·군별 경관 관리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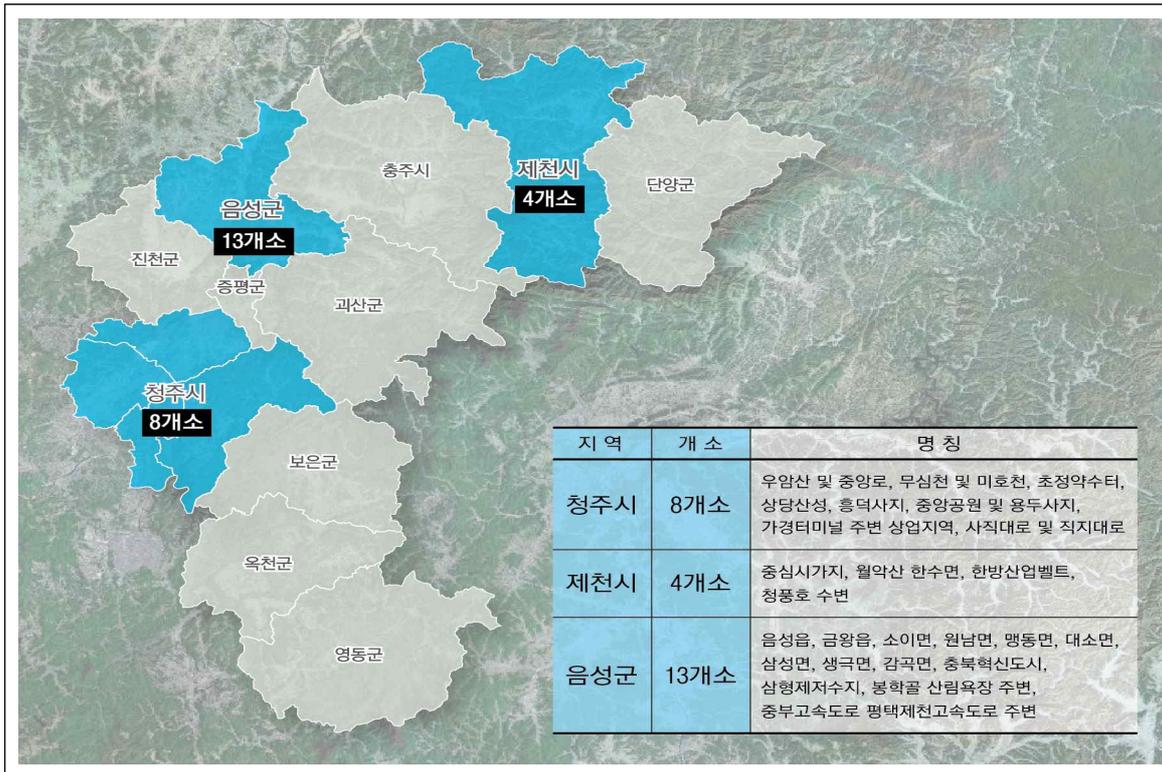
청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남대, 대청호 일대의 경관관리 / 시가지 내 특화가로축 형성</li> <li>○ 쾌적한 산업단지 경관 조성 / 무심천, 미호천의 수변경관 보전</li> </ul>
충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주호 주변 경관보전 및 관리 / 탄금대 주변 경관관리 및 연계</li> <li>○ 수안보 온천지구 특화경관 형성 / 충추천 주변 정비</li> </ul>
제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풍호 주변의 경관관리 / 제천역 및 제천 버스터미널 진입경관 형성</li> <li>○ 월악산 조망경관 관리 / 역사 문화네트워크 구축</li> </ul>
보은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려한 자연환경 보전 / 축제와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 조성</li> <li>○ 노후화 된 지역의 정비 / 자연친화적 이미지의 도로경관 조성</li> </ul>
옥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 특화경관 형성 / 금강 주변의 양호한 조망 보호</li> <li>○ 옥천의 정체성을 부여한 디자인 도입 / 조망경관 보전 및 관리</li> </ul>
영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거점의 보전 및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 / 축제와 연계한 지역 활성화</li> <li>○ 철도 주변의 쾌적한 경관 확보 / 통합적 디자인 도입</li> </ul>
증평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하천으로 보강천 조성 및 보전 / 시가지 내 상업가로시설 정비</li> <li>○ 두타산으로의 조망 확보 / 에듀팜(연촌리 관광특구)주변 관리</li> </ul>
진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색있는 관광거점 조성 / 접근성 높은 친수공간 관리</li> <li>○ 주요 자연 경관자원의 조망 보존 /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경관 형성</li> </ul>
괴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휴양 특화지구 조성 및 경관 보전 / 친환경 관광루트 거점 조성</li> <li>○ 주요 시가지의 특징적인 경관형성 / 노후된 기반시설, 건축물 정비</li> </ul>
음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저수지의 경관 보전 / 역사 경관자원 주변부의 경관관리</li> <li>○ 녹지축 주변의 경관 관리방안 마련 / 특화마을 중심의 활성화 도모</li> </ul>
단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담상봉 주변 경관특화 / 축제와 더불어 소백산 일대 특화경관 형성</li> <li>○ 시장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경관 조성 / 온달관광지 주변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유도</li> </ul>

## 5. 중점경관 관리구역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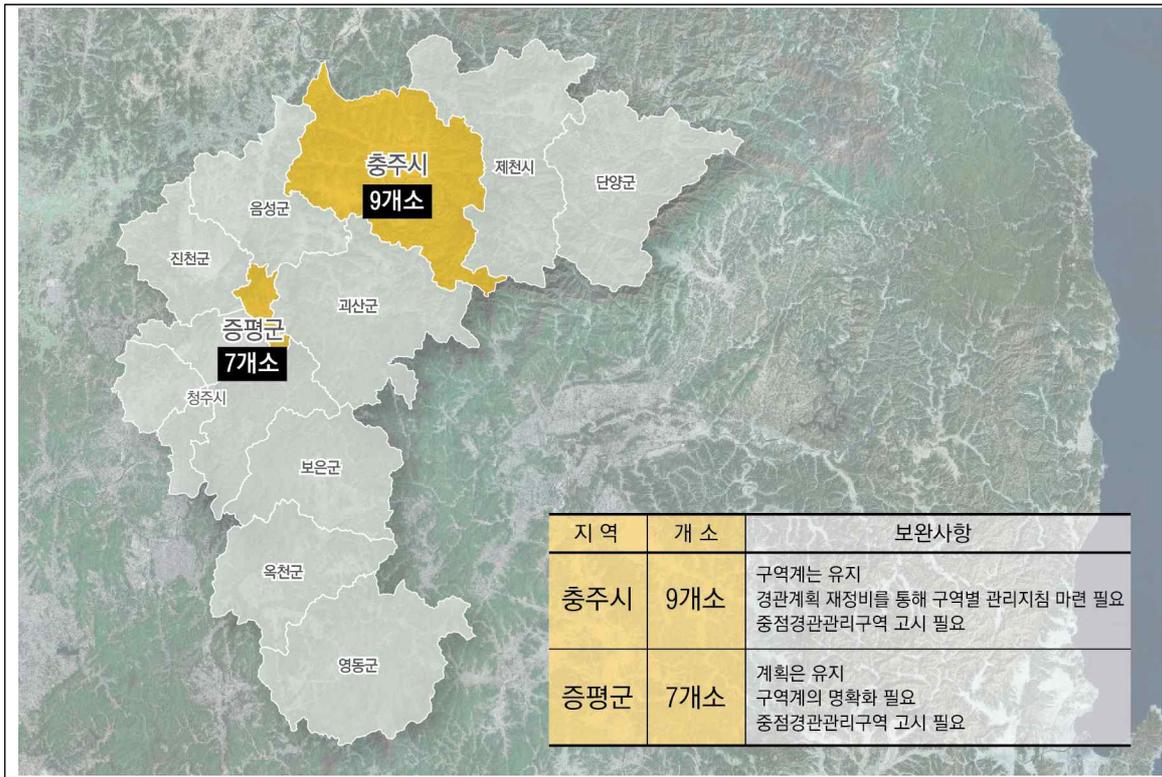
### ○ 설정과정 및 목적

시·군 경관계획 현황검토	○ 경관계획이 수립된 시·군 내 설정된 중점경관 관리구역 현황검토
중점경관 관리구역 반영	○ 구체적으로 구역계를 제시한 시·군의 중점경관 관리구역 반영 ○ 불 불명한 구역계는 보완적 차원의 구역계 제안
중점경관 관리구역 제안	○ 경관계획 미수립 지역은 중점 경관요소를 제안하여 경관계획 수립유도
관련지침 마련	○ 중점 경관 관리구역 기본방향 및 관리지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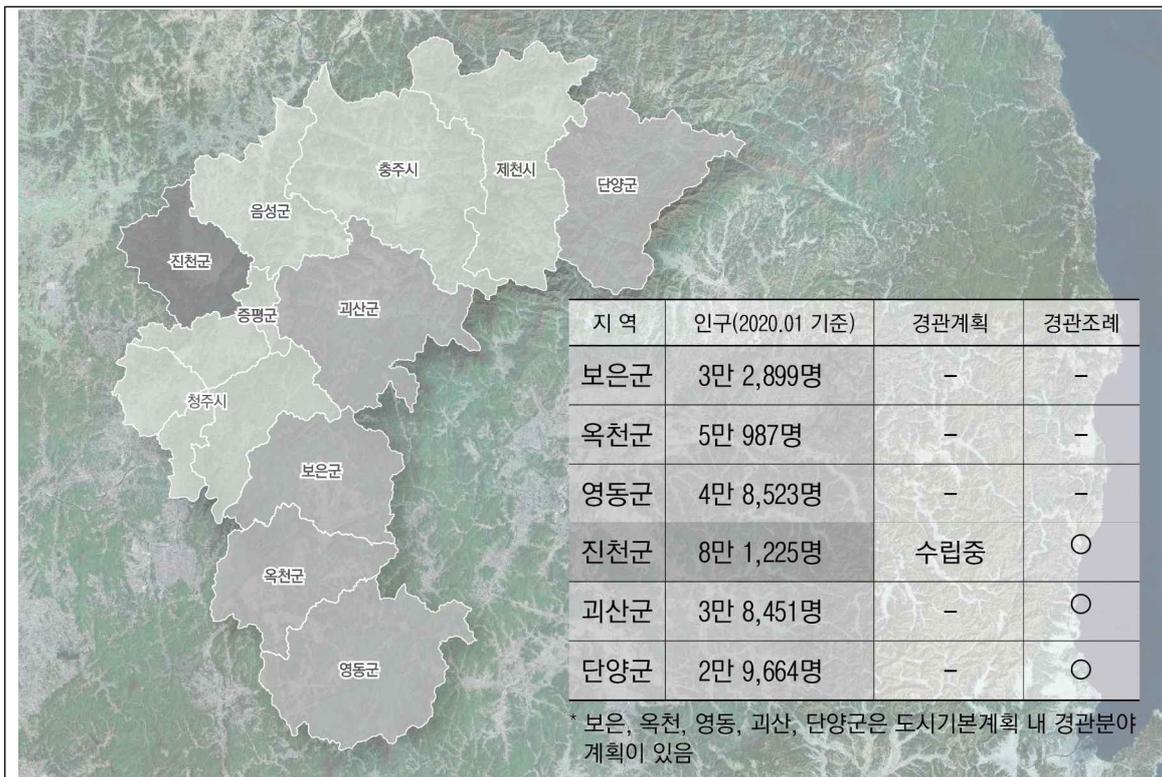
### ○ 중점경관 관리구역 반영대상 시·군



○ 중점경관 관리구역 보완 필요대상 시·군



○ 중점경관 관리구역 신규 설정대상 시·군



○ 신규 설정대상 시·군 대상자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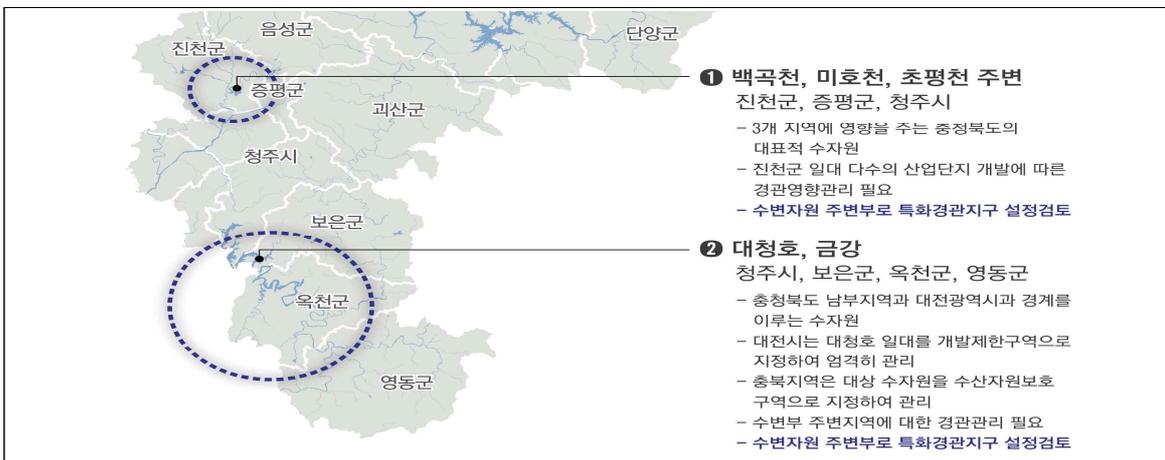
- 충청북도 경관계획을 통해 도출된 경관자원 중 도내 경관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경관 관리구역 대상 선정원칙에 해당되는 대상자원(안) 제시
- 경관계획 수립을 예정하고 있거나 수립 중인 시·군은 중점경관 관리구역 대상선정 시 참고가능

지역	지역 중요경관자원
보은군	속리산(국립공원), 구병산, 법주사, 삼년산성, 속리산휴게소, 대청호(금강), 보청천, 삼가저수지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팔음산, 정지용생가, 옥천IC, 대청호(금강)
영동군	대청호(금강), 민주지산, 각호산, 반야사, 추풍령역, 석천
진천군	김유신 탄생지, 배티성지, 만뢰산, 두타산, 백곡지, 초평천
괴산군	속리산(국립공원), 도명산, 백화산, 조령산, 김향묵고택, 연풍IC, 달천, 괴산호
단양군	소백산(국립공원), 태백산, 금수산, 수리봉, 온달산성, 도담삼봉, 단양IC, 남한강(충주호)

\*시·군별 경관계획 수립과정중 검토내용에 따라 대상자원은 변경될 수 있음.

## 6. 경관지구 관리계획

- 도내 지정된 경관지구의 유형(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에 따른 경관관리 지침 제시
- 경관지구 추가지정이 필요한 대상 경관자원 제안



## V

### 특정 경관유형 관리계획

- 경관구조별 경관관리와 함께 특정한 유형과 요소별 공통적 경관관리 지침을 통해 각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추진



## VI

### 실행계획

- 경관행정 및 제도 선진화 검토
  - 경관계획의 제도적 기반을 위한 경관사업 시행근거 마련, 경관심의 매뉴얼과 부합될 수 있는 심의운영 방안 등의 개정 제안
-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경관 관리방안
  -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등 경관관리가 필요한 대상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경관적 고려사항 제시
-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추진방안
  -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의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
  - 경관 사업유형에 따라 충청북도 경관사업 제안

## 【관 계 법 령】

### □ 경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시·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 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시·군·구·행정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은 해당 시·도의 경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군·구·행정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 내용과 시·도의 경관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시·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④ 경관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받은 시장·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